실업급여 청구자 대상 실업 보험 개혁안

실업보험 소개

실업보험은 본인의 과실 없이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합니다. 각 주는 자체의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며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실직하기 전에 최소 일정액의 소득이 있고, 취업 준비와 의사가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고용주 보험료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2013년 3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시급하게 필요한 제도를 개혁하는 법률에 서명하였습니다. 일부 변경 내용은 신규 실업 수당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변경 사항은 현재 청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

실업 수당 신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실업보험 급여 요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미국 주의 3분의 1은 최대 급여가 뉴욕보다 높음)입니다. 1999년부터 근로자 실업급여가 정체되었기 때문에 실업보험제도는 현행 생활비의 추세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개혁이 달성해야 하는 목적

- 급여 요율 인상. 최대 및 최소 주급여 요율을 인상합니다. 이같은 변경은 다른 주의 급여와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뉴욕주가 경쟁력을 갖습니다. 2014년 10월 6일부터 최소 주급여 요율은 64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됩니다. 2014년 10월 6일부터 최대 급여 요율은 405달러에서 420달러로 인상되며 그 후 매년 인상됩니다.
- 해고 감소.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Shared Work Program)은 일시적인 실직 상태에 있는 종업원에게 부분 실업보험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자 해고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개혁 방안은 최소 2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까지 그 프로그램을 확장하며 여기에는 파트타임 직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실업급여금은 최대 26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법의 변경을 통해 본 확대 프로그램은 연방 배상이 종료 예정되는 2015년 8월까지 운영될 것입니다.
- 실업급여 청구자의 신속한 재취업 장려. 개혁은 실업급여 청구자가 신속하게 재취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구직 가능성을 제고하는 행동을 보상하며 실업 기간의 연장을 방지합니다.
- 사기 방지. 신설되는 사기 적발 및 방지 조치는 귀하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을 고갈시키는 실업보험 사기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기에 대한 벌금. 연방 요건에 따라 사기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지불청구에 관한 정보에 허위 기재가 밝혀지면 과거 실업급여가 회수되고 향후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과 더불어 벌금 15% 또는 100달러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입니다. 청구자는 서류를 적절히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업보험 안내서를 검토하시고 궁금한 점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abor.ny.gov/ui/claimantinfo/contactinfo.shtm.
- 구직 요건 강화. 2014년 1월 1일,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모든 개인이 주별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직 활동에는 개별 구직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경력 센터 직원과의 협력과 노동부에 입증할 구직 활동 기록의 유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과 관련해 자주하는 질문은 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labor.ny.gov/ui/claimantinfo/worksearch.shtm#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 활동 기록 양식(http://www.labor.ny.gov/formsdocs/ui/ws5.pdf)의 뒷면에서도 해당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고 또는 퇴직 수당. 실업급여 청구자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대 급여 요율보다 높은 해고 또는 퇴직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평등 기회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의 요청 시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